

## 『2026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참가업체 모집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탄소관리 요구, 친환경 인증 요구 확대 등 국제 탄소·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6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2월 10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 1. 사업 개요

사업명 : 2026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세부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별 선택신청(택1) 또는 중복신청 가능)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 (산정) 사업장(Scope 1~2) 및 제품(CBAM, 탄소발자국)에 대한 탄소배출량 산정 - (감축) 배출량 산정, 공정 분석을 통한 최적 온실가스 감축 요소 도출 및 전략 수립
환경인증(EU 에코라벨) 인증 지원 서비스	환경인증(EU 에코라벨) 취득 비용 기업 자부담(선지출), 인증 취득 후 증빙서류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사후 지원금 환급

사업기간 : 선정일 ~ '2026.11.30

사업목적

-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 및 주요 글로벌 선진국의 탄소 배출 관련 규제 가속화에 대비하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탄소중립 대응역량 강화
- 국내·외 고객사의 다양한 글로벌 환경규제(탄소배출량 정보 공개 요청, 감축 방안 수립, 제품 환경인증 취득)에 맞춤형 지원

주최/주관

- 주 최 : 경기도
- 주 관 :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 지원목표

-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관리·감축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탄소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
- EU 시장 진출 기업의 환경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친환경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판로 확대

2. 신청 및 지원 세부내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지원개사

세부 사업명	지원개사	지원금액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20개사	1개사당 800만원 (기업 자부담금 99만원 / VAT포함)
환경인증(EU 에코라벨) 인증 지원 서비스	5개사	1개사당 400만원 (인증 취득 후 사후 환급 지원) ※지원한도 최대 400만원 범위 내 지원(기업 자부담 최소 10%)

□ 신청기한 : 2026.02.10.(공고일) ~ 2026.03.11 16:00 까지

□ 참가제한 및 감점사항

- (참가제한) 휴 · 폐업했거나 국세 · 지방세 체납기업
  - (참가제한) 사업 진행 중,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연락 두절, 협조 불이행 등)
  - (참가제한)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예, 중도 포기 등)
  - (감점 5~10점) 2026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일부 지원사업(온라인플랫폼 마케팅 지원, 비관세장벽 대응 인증 지원, 글로벌공급망 대응 대체공급망 발굴 및 관세환급 지원, 통상환경 조사단) 중 3개 초과 수혜받은 기업
  - (감점 10~20점) 2024-2025 경기FTA통상진흥센터 「탄소배출량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에만 적용)  
\*단, EU CBAM 6대 업종 중 동일 품목이 아닌 새로운 품목으로 신청하는 경우 감점 50%만 적용  
\*동일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감점 50%만 적용
- 사업 선정 후, 참가 포기 시 1년 동안 경기도 해외마케팅 사업에서 제외

## □ 세부 지원내용 (\*신청 시, 3가지 유형 중 택 1)

지원 유형	A유형 [조직 온실가스] 『관리체계 + 감축』 컨설팅	B유형 [CBAM 대응] 『배출량 산정 + 감축』 컨설팅	C유형 [제품탄소발자국-CFP] 『전과정평가(LCA) + 감축』 컨설팅
지원 대상	[역량강화 + 관리체계 마련] -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주요 배출원별 감축요인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업	[CBAM 배출량 신고 대상 기업] - EU CBAM 품목(철강,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 중 확정기간 대비를 위해 내재배출량 산정 및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한 기업	[직접 수출기업] -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을 통해 무역장벽 해소가 필요한 기업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Scope 1~2)</li> <li>- 온실가스 배출 현황 분석</li> <li>-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QA/QC 관리 매뉴얼</li> <li>■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방안 및 관리체계 구축</li> <li>- 공급망 실사 대비를 위한 저감 노력 &amp; 실적 DATA 구축</li> <li>- 사업장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li> <li>■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BAM 배출량 산정 및 체계 구축</li> <li>-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대응</li> <li>- CBAM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li> <li>■ CBAM 확정기간('26.1~) 검증 대비 기업 맞춤 지원</li> <li>- 제3자 검증 대비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관리 체계 구축</li> <li>- 검증 대응을 위한 배출량 산정 근거 자료(Activity Data) 및 증빙 문서 체계화</li> <li>■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과정평가(LCA) 기반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CFP)</li> <li>- ISO 14067, PAS 2050 및 국내 산정 기준 적용</li> <li>■ 수출기업 제품 및 통상 이슈 심층 지원</li> <li>- 기업 제품군 및 수출국 기준 적용 배출량 산정</li> <li>- 주요 수출품에 대한 제품 탄소발자국 요구 대응</li> <li>■ 기업 맞춤형 현장 교육</li> </ul>
감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내 핵심 배출원 식별 및 배출 기여도 분석</li> <li>■ 주요 배출원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진단 및 감축 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량 산정 기반의 전구물질 탄소집약도 정밀 분석</li> <li>■ 주요 공정 진단을 통한 내재배출량 감축 방안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부원료 변경 및 공정 효율화 시나리오 구성</li> <li>■ 시나리오별 최적 감축 효과 분석 및 비교 결과 제공</li> </ul>

\* **A유형(조직 온실가스)** :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연료별, 시설별,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량을 파악하고 산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함

\*\* **B유형(CBAM)** : EU 역내 수입품목에 대한 탄소세(EU 6대 업종) 부과 제도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EU 역내로 수입되는 탄소 고배출 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2026년 1월부터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에 돌입함에 따라 배출량 산정 및 검증이 의무화됨
- 검증 관련사항 : EU 집행위는 2025년에 검증 원칙에 관한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546)을 통해 검증 절차를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식 검증인(Verifier) 등록 및 시스템(CBAM Registry)상 검증활동 승인은 2026년 9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임.
- 기업 대응 : 2026년 제출자료부터 제3자 검증에 대응가능 수준의 데이터 정합성 확보와 증빙문서 체계 필요

\*\*\* **C유형(제품탄소발자국)** :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단위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확보함. 공급망 탄소정보 공개 대응 및 마케팅, 무역장벽 해소 등에 활용(제품 제조공정 데이터가 확보 가능한 기업)

- ISO 14067 : 제품 탄소발자국 정량화를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 PAS 2050 : 제품 생애 주기(Life Cycle)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산정 국제 표준

\* 기업현황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 모집 우선순위

- 1순위) EU CBAM 적용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CBAM 대상 품목을 취급하며, 향후 배출량 보고·검증 의무에 대비가 필요한 EU 수출기업 우선 지원
  - \* CBAM 적용 6대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 2순위) 해외 바이어·공급망으로부터 탄소 정보 제출 요구를 받은 기업 : 글로벌 공급망 참여로 인해 탄소배출량 공개 및 감축 요구를 받고 있으나 대응 역량이 부족한 기업 우선 지원

## □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 ~ 3월 11일(수) 16:00 까지**
  - ※ 지원기업이 모집기업의 4배수를 초과할 경우, 조기에 접수 마감할 수 있음.

### ○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경기기업비서\(http://www.egbiz.or.kr\)](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 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③ (하단) ‘분야별지원사업’카테고리 클릭 후 ⇒ ‘수출’ 카테고리에서 “2026 탄소 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1차) 계량 평가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경기기업비서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 ①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기도 소재
-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신청서 내 공장 정보 기재 시 반드시 제출)
-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 확인 가능하도록)
-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 ⑤ 해외규격인증서(붙임6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

⑦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 고용 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경기도 성과공유 확인기업, 면접수당 지급 기업,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주 4.5일제 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필수] 2025년 수출실적확인서 ※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며 필수 제출

<p>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사 : ①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a href="http://webdocu.kita.net">webdocu.kita.net</a>) (<a href="http://www.kita.net">www.kita.net</a>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a href="http://www.kita.net">www.kita.net</a>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li> <li>②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li> <li>-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li> </ul> <p>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a> 방문</li> <li>*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li> <li>*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li> <li>*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li> <li>*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li> </ul>
--

다. (2차) 심층 평가 제출서류 (→ \*[붙임5] 심층 평가 요소 참고)

제출서류	비 고
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6대 품목에 해당하는 HS CODE 증빙 서류 (→*수출신고필증 제출)	*CBAM 6대 품목: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자동차 관련 부품, 가전제품 제조기업의 경우, 철강 및 알루미늄 재료 관련 기업 별도 표기
② 해외 바이어 및 국내 협력사 등 고객사로부터 탄소배출 관리 요구를 받은 문서	*고객사 이메일도 가능
③ 탄소배출량 신고 대상기업 및 유럽(또는 미국) 수출기업의 협력사임을 증빙하는 서류	
④ 최근 3년('23-'25) 수출실적확인서 (EU 국가 별도 제출) 증빙가능한 1장만 첨부 →한국무역협회 로그인 후, 통계메뉴 클릭 자사통계 수출입실적 조회	*[對EU] 수출 예정인 경우 수출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바이어와의 계약서 첨부

⑤ ERP 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화면	
⑥ ESG 혹은 탄소중립 대응 전담 인력 재직증명서 또는 대응 전담팀 조직도	
⑦ 국내·외 ESG 및 환경 관련 인증	*ISO 9001, 14001, 45001 및 기타 ESG/저탄소 등 환경 관련 인증서 등
⑧ 최근 3년('23~'25) 탄소국경세(또는 ESG) 관련 교육/설명회, 컨설팅 등 수료증	*2회까지 점수 인정 가능
⑨ 최근 3년('22~'24) 매출/영업이익, 부채율	*재무제표 제출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됨.

\* 해당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 [필수] [붙임1]사업 참여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제조공정도 제출**

: 모집공고문 [붙임1]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후 중소기업확인서, 제조공정도와 함께 제출

**마. [필수] [붙임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출**

: 모집공고문 [붙임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인감 날인 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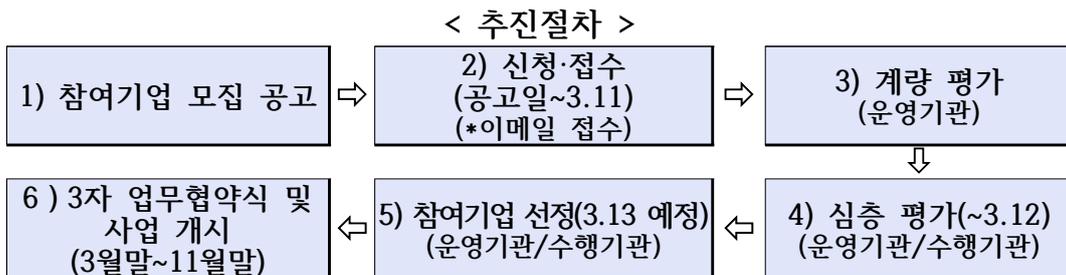
\* 다, 라, 마 의 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해주시어 압축 파일로 변경 후, \*별첨파일(첨부파일)란에 첨부바랍니다.

□ 평가 및 선정방법

- (1차, 계량 평가) → 총 50점
- (2차, 심층 평가) → 총 50점
- (최종선정) 계량+심층평가를 통해 선발된 20개사 최종 선정 및 지원
- 신청·접수(공고일 ~3.11) → [1차]계량 평가 → [2차]심층 평가(~3.12) → 참여기업 선정(3.13 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업에 한해 별도 연락 예정



\* (운영기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참여기업) 사업 선정기업

##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품목의 EU 에코라벨 인증 취득 제반 비용 지원(최대 400만원\*)
  - \* 총 소요비용은 기업별, 제품별로 상이하며, 기업 자부담분 있을 수 있음
  - \* 지원한도 최대 400만원 범위 내 지원(기업 자부담 최소 10%)
  - \* 타 기관 지원사업(해외인증)에 동일 품목에 대해 EU 에코라벨 등록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비용지원 후 타 기관 지원 사업(해외인증)과 중복지원 확인 시 지원 금액 전액 환수 조치하며, 1년간 지원 제한 적용.
- 비용항목 : EU 에코라벨 취득 비용(ex.컨설팅비, 심사비, 인증 취득료 등)
- 지원방식 : EU 에코라벨 취득 제반 비용 기업 자부담(선지출), 인증 취득 후 인증 전체비용 지출 서류(컨설팅기관 입금내역)와 인증 완료 증빙서류 제출 하여 사후 지원금 환급

## □ 모집 우선순위

- 1순위) EU 시장 수출 비중이 높거나 확대 계획이 있는 소비재·완제품 제조기업 : 섬유, 가구, 세제, 화장품, 생활용품 등 에코라벨 적용가능 품목\*을 보유한기업 우선 지원
  - \* EU 에코라벨 대상 품목: 생활소비재(세제, 화장품 등), 섬유(의류, 원단 및 직물 등), 가구건축 자재(페인트, 바닥재 등), 전자제품(식기세척기, 보일러 등), 기타 제품 등
- 2순위) 해외 바이어로부터 친환경 인증 요구를 받은 기업: EU 에코라벨 등 공식 환경 인증이 수출 계약, 입찰, 유통망 진입에 중요한 요건이 되는 기업 우선 지원

## &lt; EU 친환경 관련 광고 및 라벨링 요건 강화 전망 &gt;

- EU → '26.09부터 친환경 주장 및 라벨링 요건 강화될 전망
- 추후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되지 않은 친환경 주장과 라벨은 사용이 금지될 전망
- 기업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친환경', '에코', '탄소중립', '기후친화적', '생분해성' 등의 문구 사용 금지
-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된 문구 사용의 경우, 추후 더욱 까다로워진 요건 적용될 것으로 예상
- EU에는 230여 개의 지속가능성 라벨과 100여 개의 친환경 에너지라벨이 있으나 절반은 검증 절차가 미흡
- EU 집행위는 법안 제안 시 신뢰도 있는 친환경 라벨로 'EU 에코라벨'을 지목한 바 있음
-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규제 시행에 앞서 친환경 주장 및 홍보 문구에 적합한 과학적 증빙 자료를 구비하고,
-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고, 각 수출국의 라벨링 요건을 검토해야 함.

[참고: KOTRA 브뤼셀 무역관 해외시장뉴스]

## □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 ~ 3월 11일(수) 16:00 까지
  - \* 지원기업이 모집기업의 4배수를 초과할 경우, 조기에 접수 마감할 수 있음.

○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경기기업비서\(http://www.egbiz.or.kr\)](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 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③ (하단) ‘분야별지원사업’카테고리 클릭 후 ⇒ ‘수출’ 카테고리에서 “2026 탄소  
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1차) 계량 평가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경기기업비서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 ①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기도 소재
-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신청서 내 공장 정보 기재 시 반드시 제출)
-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 확인 가능하도록)
-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 ⑤ 해외규격인증서(붙임6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
- ⑦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 고용 우수기업, G-노 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경기도 성과공유 확인기업, 면접수당 지급 기업,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주 4.5일제 기업
  -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 ⑧ [필수] 2025년 수출실적확인서 ※[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며 필수 제출

-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①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http://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http://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②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다. (2차) 심층 평가 제출서류 (→ \*[붙임5-1] 심층 평가 요소 참고)**

: [붙임2]EU 에코라벨 사후 인증 지원 서비스\_제출양식 서류 작성 후 제출

① [필수-서식1] 참가신청서

② [필수-서식2] 서약서

③ [필수-서식3] 수출계획서(필요 시 관련 자료 추가 첨부)

**※ [붙임2]의 서류를 작성하신 후, \*별첨파일(첨부파일)란에 첨부바랍니다.**

□ 평가 및 선정방법

○ (1차, 계량 평가) → 총 50점

○ (2차, 심층 평가) → 총 50점

○ (최종선정) 계량+심층평가를 통해 선발된 5개사 최종 선정 및 지원

○ 신청·접수(공고일 ~3.11) → [1차]계량 평가 → [2차]심층 평가(~3.12) → 참여기업 선정(3.13 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업에 한해 별도 연락 예정

[붙임4]

## 2026년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기준		
계			100	
[1차] 계량 평가 (50)	기업 기본 (32)  공공인증서 등 보유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2.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2.5)	5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4)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9
		해외 규격인증 획득 <sup>1)</sup>	해외 규격인증서(최대 2건)    2점 / 건	4
		국내특허 취득 <sup>2)</sup>	특허(최대 2건)                    2점 / 건	4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3)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런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 의무고용 준수기업(2)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5) 성과공유 확인기업(5) 면접수당 지급 기업(1)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2) 주 4.5일제 기업(2)	10 (최대)	
	참가 실적 (5)	직전 2년('25, '24)통상시책 참가 여부(경기도 주관)	신규(5), 1회(4), 2회(3), 3회(2), 4회 이상(1)	5
수출 실적 (13)	전년도(2025년) 수출금액 ※ 전년도(2025) 수출증명서 미 발급기간 시 전전년도(2024) 수출증명서	10만불 미만(13)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0)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7) 100만불 ~ 500만불 미만(4) 500만불 이상(1)	13	
[2차] 심층 평가 (50)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CBAM 및 환경 규제 대응 시급성  ※[붙임4] 참고	EU 수출 및 예정인 기업, EU CBAM 적용 6대 업종, 기업체 탄소국경세(또는 ESG) 전담인력/전담부서, ERP 시스템 등 구축 기업, (국내·외)ESG/저탄소 관련 인증 취득, 해외바이어 및 국내 대기업 등 협력사로부터 탄소 관리 요구를 받은 문서, 탄소국경세(또는 ESG) 교육·설 명회 수료증 등을 고려함.	50	
	[EU 에코라벨 인증 지원 서비스] -인증 준비도 및 필요성  ※[붙임4-1] 참고	EU 에코라벨 대상 품목 여부, EU 수출 실적 및 계획, 제 품 환경성 수준, 기존 환경인증 보유 여부, 인증 취득 의지 등을 고려함.		
참가제한 및 감점사항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감점20점	
	2026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통상지원사업 중 3회 초과 수혜를 받은 기업 (온라인플랫폼 마케팅비 지원, 비관세장벽 대응 인증 지원 및 수출상담회, 글로벌공급망 대응 대체공급망 발굴 및 관세환급, 통상환경 조사단)	5회 이상	감점10점	
		4회	감점5점	
	2024~2025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 *단, CBAM 6대 신고 업종 중 동일품목이 아닌 새로운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감점 50%만 적용 *동일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감점 50%만 적용	25년도 참여	감점20점	
	24년도 참여	감점10점		

1)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 573개 (\*[붙임6] 참고)

2) 특허(또는 전용실시권 계약서), 실용신안등록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붙임5]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2차)심층 평가 요소

< (2차) 심층 세부 평가 항목/ 총 50점 >

평가 요소	세부 평가 항목
시급성 (최대 30점)	▪ EU(영국 포함) 탄소배출량 신고 6대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30점)
	▪ EU(영국 포함) 바이어 또는 국내 협력사로부터 탄소배출량 작성 요청 받은 기업(20점)
	▪ EU(영국 포함) 탄소배출량 신고 대상기업의 협력사(10점)
	▪ EU(영국 포함) 수출 및 수출 예정중인 기업(5점)
	▪ EU(영국 포함) 수출기업의 협력사 또는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 제조기업(5점)
기업역량 (최대 15점)	▪ 기업 내외적인 시스템 마련 여부 (ex. ERP 시스템 등)(3점)
	▪ ESG 혹은 탄소중립 대응 전담 부서 및 전담 인력 배정 여부(3점)
	▪ ESG 및 저탄소 등 환경 관련 인증 취득한 기업(3점)
	▪ 최근 3년 탄소중립 관련 교육·설명회 수료한 기업(3점)
	▪ 최근 3년 평균 매출/영업이익 또는 증가율 등 우수성·건전성(3점)
효과성 (최대 5점)	▪ 향후 탄소중립 대응 우수기업으로의 성장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성(5점)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6대 업종: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붙임5-1] 「EU 에코라벨 사후 인증 지원 서비스」 →(2차)심층 평가 요소

< (2차) 심층 세부 평가 항목/ 총 50점 >

평가 요소	세부 평가 항목
적합성 (최대 20점)	▪ 신청 제품이 EU 에코라벨 적용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10점)
	▪ EU 수출 실적 보유 여부 또는 향후 EU 시장 진출 계획의 구체성(10점)
인증 준비도 (최대 5점)	▪ 해외인증 준비도(시험성적서 및 공인 시험·인증기관 견적서 보유)(5점)
사업 참여 의지 (최대 20점)	▪ 사후 인증 취득에 대한 기업의 의지 및 내부 추진 의사(10점)
	▪ 컨설팅·자료 제출·현장 대응 등 사업 수행 협조 가능성(10점)
기대효과 (최대 5점)	▪ 인증 취득 시 수출 확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기대효과(5점)

[붙임6]

##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규격인증 대상분야(573개)

※26년 중소기업부 지원 규격 분야 준용에 따라 인증 범위가 추가 될 수 있음

국가별 (지원 건수)	규 격 명		
미국 (97)	3-A (미국낙농 및 식품가공기기인증)	AAFA (미국천식알레르기 친화인증)	AAR (미국철도운송시설인증)
	ABS (미국선급인증)	ACMI AP (미국미술 및 창작재료인증)	AGA (미국가스설비인증)
	AHAM (미국가전제품인증)	AHRI (미국냉동공조기기인증)	AISC (미국강구조물인증)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국가표준규격)	ANSI/ASHRAE (미국냉난방공조표준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국사무 및 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 및 가스산업인증)
	ASME (미국보일러압력용기인증)	ASTM (미국재료 및 제품표준규격)	AWWA (미국수도협회품질인증)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A Proposition 65 (미국캘리포니아법령65)	CADR (미국청정공기공급률인증)
	CARB (캘리포니아공기청정 장치인증)	CCS (미국콘텐츠클레임표준)	CEC (캘리포니아에너지 효율관리제도)
	CPL (미국속도측정장비 적합인증)	CPSIA (미국소비자제품규격인증)	CRRC (미국에너지절감형 도료라벨인증)
	CTI (미국냉각탑열성능인증)	CWA (미국수자원보호인증)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미국DOE에너지효율표준)	DOT (미국운수성인증)	ENERGY STAR® (미국에너지절약 소비자제품프로그램)
	Environments For Living Certified Green® (미국친환경녹색인증)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PEAT (미국전자제품환경평가)
	ETL (미국전기기기 안전규격인증)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FAA (미국항공기인증)
	FCN (미국식품포장재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국 허가·등록제도)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DA-NDI (미국신규 건강기능식품원료)	FedRAMP (미국클라우드보안 인증서비스)	FHWA (미국도로안전시설물인증)
	Field Evaluation (미국현장설치승인평가)	FIPS (미국연방정보처리 표준인증)	Floor score (미국바닥재실내 공기질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미국밸브유해물질 누설인증)	Gluten Free (미국글루텐안전인증)
	Green Globes (미국그린글로브인증)	Green Seal (미국친환경인증)	Greenguard (미국실내공기질 시험·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제품등록)	Halogen Free (미국할로겐안전인증)	HERS (미국주택에너지 효율등급제도)
	HIRF (미국고강도전자기장)	HPD (미국친환경건축재료 유효성검증)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700 National Green Building Standard®(NGBS Green) (미국친환경건축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	MIL-STD (미군군사규격)	NB mark (미국압력용기압력 완화장치인증)	

국가별 (지원 건수)	규 격 명		
	-플로리다주)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 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 구축시스템)	NFPA (미국소방설비인증)
	NFRC (미국창호단열규정)	NGV2 (미국고압연료탱크규격)	NIJ (미국방탄성능인증)
	NIOSH (미국산업안전보건 제품인증)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미국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C (미국국가위원회 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공인 시험기관인증)
	* NRTL (미국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지정기관 중 선택하여 신청 ※ NRTL인정 21개 기관(25.06.기준): BACL, BVCPS, CSA, DEKRA, Element, Eurofins E&E NA, FM, IAPMO, ITSNA, LTC, NNA, NSF, QAI, QPS, SGS NA, SPTL, SWRI, TUV Rheinland NA, TUV SUD America, TUV SUD PSG, UL		
	NTEP (미국측량프로그램)	NTPEP (미국교통제품평가 프로그램)	PTCRB (북미휴대폰인증)
	RECs (미국신재생에너지증명서)	Responsible Recycling(R2) (미국재활용책임인증)	SCS (미국과학적환경 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TSCA (미국화학물질등록제도)	U.S Food Equipment Certification (미국상업용주방기기인증)
	UL CAP (미국사이버보안평가 프로그램인증)	UL ECV (미국환경성주장검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유럽 (37)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Biopreferred program (미국농무부 바이오매스인증)	USDA Organic (미국농무부유기농인증)
	Water Sense Label (미국물효율인증라벨) WQA(Gold Seal) (미국수질협회 -음용수제품품질인증) AdBlue (유럽자동차매연 저감제인증)	WH-ETL (북미건축자재마크)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CCA (유럽저전압전기장비인증 상호인정제도)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BSI BS EN489 (유럽열(히트)파이프지침)
	CEN/TS 17342 (유럽오토바이 도로안전기술규격)	CCNR (유럽라인강항해 중앙위원회인증)	CE (유럽통합규격인증)
	EASA (유럽항공안전인증)	COSMOS (유럽유기농 및 천연화장품인증)	DEC (유럽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인증)
	ECO PASSPORT (유럽섬유제품공정인증)	ECARF (유럽알러지제품인증)	ECB-S (유럽금고안전인증)
	EHEDG (유럽위생설계 및 디자인인증)	Eco-Labeling (EU환경마크)	EFSA (유럽식품안전인증)
	EN 12727 (유럽고정의자의안전·강도 ·내구성요구사항)	e-Mark (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	EN 12469 (유럽미생물안전 캐비닛성능기준)
	EN ISO 20471 (유럽반사색안전조끼인증)	EN 14350 (유럽어린이음용장비규정)	EN 15267 (유럽대기질 자동측정시스템평가인증)
	EU ORGANIC-EEC834/2007 (EU유기농식품인증)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ESV (유럽위성통신인증)
European Privacy Seal (유럽프라이버시인증)	EU REACH (유럽화학물질등록제도)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FIBC (유럽산업용)	Green Dot (유럽포장재 폐기물관련인증)	

국가별 (지원 건수)	규격명		
	M Classification (유럽공공건물내 섬유재료규제)	별크포상재인증) Nordic Swan (유럽노르딕스완환경인증)	Novel Food (유럽신규식품 및 식품첨가제인증)
	Regulation (EU) 10/2011 (유럽식품플라스틱인증)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 규제지침)	Seedling (유럽생분해인증제도)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 적합성인증)		
네덜란드(4)	KEMA (네덜란드전기안전인증)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네덜란드반도체 RF보안인증)
	N-PTI (네덜란드디젤자동차배출 미립자개수농도측정기 형식승인)		
덴마크(4)	DEMKO (덴마크전기기기인증)	Drop Mark (덴마크음용수안전인증)	Ø-label (덴마크유기농인증)
	MK Approval (덴마크 건설자재 인증)		
독일 (18)	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AGR (독일척추건강제품인증)	BDIH (독일유기농마크인증)
	BV-043 (독일해군장비규격)	DAST-Guideline (독일철강건설제품인증)	Dermatest (독일피부저자극인증)
	DIN (독일표준규격)	DVGW (독일가스식음료인증)	GS (독일품질안전)
	IT-Grundsutz (독일정보보호인증제도)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품질인증)	LTF (독일항공기감항성시험)	MPA (독일건축자재인증)
	TUV (독일기술검사협회인증)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인증)	VdS (독일화재예방 및 보안시스템인증)
영국(14)	ARL (영국알러지저감인증)	ASTA (영국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규격)	CPA (영국상업용제품인증)
	EPC (영국에너지효율인증)	FIRAGOLD (영국가구품질인증)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LR (영국선급인증)	SCPN (영국화장품등록)	UK REACH (영국화학물질등록제도)
	UKCA (영국안전규격인증)	WRAS (영국수도기자재인증)	
	ACCREDIA (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IMQ (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RINA (이탈리아선급형식승인)
프랑스(7)	ACS (프랑스보건위생적합증명)	BV (프랑스선급인증)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DGCCRF (프랑스식품·비식품시장 감시제도)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 (프랑스선급-GTT)
	NF (프랑스표준규격)	-	-
벨기에 (3)	CEBEC (벨기에 전기기기 시험소)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BENOR (벨기에 건설자재 고유 인증)
스페인(3)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스페인사이버보호 인증제도)	AENOR (스페인규격인증)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핀란드(1)	FI Mark (핀란드안전인증)	-	-
스웨덴(2)	P Mark (스웨덴규격인증)	S Mark (스웨덴전기기기안전인증)	-
노르웨이(4)	DNV (노르웨이선급인증)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인증)	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4)	ESTI Safety Mark (스위스전기자동차)	Swissmedic (스위스의료기기등록)	SEV Mark (스위스 전통 전기 안전 인증)

국가별 (지원 건수)	규 격 명			
	중전플러그인증 SVGW Certification (스위스 가스·수도 설비 인증)			
슬로바키아(1)	Health and safety act (슬로바키아장비검증)			
벨라루스(1)	BNOS (벨라루스유기농표준)			
일본 (33)	ASIA GAP (아시아식품관리제도)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시험평가)	
	Building Materials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일본건축자재평가)	CHAdEMO (일본전기차급속 충전기인증)	ClassNK (일본선급인증)	
	CMJ 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F☆☆☆☆ (일본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인증)	FESC (일본소방설비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EIC (일본용접 관리프로세스인증)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JCI (일본식품포장용기인증)	JCMVP (일본암호모듈인증)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FRA (일본불연재료인증)	JFSA (일본식품위생법)	JIA (일본가스기기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ISEC (일본IT보안평가인증)	JPEX (일본방폭인증)	
	JWWA (일본수도인증)	MLIT (일본국토교통성인증)	PMDA(JPAL) (일본의약품인증)	
	Privacy Mark (프라이버시마크제도)	PSC (일본소비생활용 제품안전인증)	SIAA (일본항균제품인증)	
	S-mark (일본안전인증)	ST MARK (일본완구협회안전마크)	Steel Fabrication Plant Grading System (일본철골제작공장인증)	
	VCCI (일본전자파장해인증)	일본 ECO 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무선통신인증 (JAPANMIC, JATE, TELEC)	
	러시아 (10)	EAC-MED (유라시아경제 연합의료기기인증)	Federal Agency for Air Transport of the Russian Federation (러시아항공조명인증)	Fire Protection Certificate (러시아소방안전증명서)
		FSB (러시아암호화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Quality control and sanitary safety of importing/exporting processed and unprocessed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및위생안전)		RS (러시아선급인증)	RTN (러시아연방위험 산업시설인증)	
SGR (유라시아위생등록)				
말레이시아(7)	BOMBA (말레이시아소방방재인증)	DOSH (말레이시아압력용기인증)	Malaysia MEPS (말레이시아에너지효율)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MS 144 (말레이시아콘크리트 보강용강선규격)	NPRA (말레이시아 화장품·의약품등록)	
	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5)	COFEPRIS (멕시코보건안전인증)	I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CEL (멕시코 청정에너지인증)		
대만 (8)	BSMI (대만강제인증)	CNS (대만국가표준)	CR (대만선급)	
	NCC (대만통신기기인증)	Taiwan Green mark (대만환경보호인증마크)	VSC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대만FDA (대만식품의약품 의료기기허가)	TAICS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보안 마크 인증제도)		
태국(4)	NBTC (태국통신인증)	Thailand Green Label (태국그린라벨)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태국FDA (태국식품의약품 의료기기허가)			

국가별 (지원 건수)	규 격 명		
브라질(9)	ABESE (브라질전자보안 제품인증제도)	ANATEL (브라질통신인증)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BRAZIL NR (브라질산업안전관리인증)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MAPA (브라질농약약품등록)
	PBE (브라질에너지라벨링제도)	Selo Organico (브라질 유기농인증)	Selo SIF (브라질 연방식품인증)
사우디아라비아(6)	CST (사우디아라비아통신인증)	SASO (사우디아라비아강제인증)	SFDA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품인증)
	SLS (사우디에너지효율인증)	CITC (사우디 정보통신기술위원회인증)	G-Mark (걸프적합성인증시스템)
튀르키예(2)	KKDIK (튀르키예 화학물질 등록제도)	TSE (튀르키예강제인증)	-
싱가포르 (11)	BCA Green Mark (싱가포르건축물 그린마크인증)	BS476-22 (싱가포르방화문테스트)	CPSR (싱가포르제품안전인증)
	Data Protection Trustmark (싱가포르데이터보호표준 및 적합성인증)	HSA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MTCS (싱가포르클라우드 보안인증)	NITES (싱가포르NITES보안인증)	SFA (싱가포르식품시설등록)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Singapore WELS (싱가포르물효율)	
아르헨티나(6)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INTI (아르헨티나 산업기술청인증)	IRAM (아르헨티나규격인증)
	SENASA (아르헨티나 위생 및 품질 인증)	ENACOM (아르헨티나 유무선통신인증)	CHAS (비순정 자동차 부품 승인 인증)
	CAPE (순정 자동차 부품 승인 인증)		
인도(13)	ARAI (인도자동차시스템 부품인증)	BIS (인도제품인증)	CDSO (인도화장품등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RS (인도전자제품 강제등록제도)
	DCGI (인도의약품허가제도)	IBR (인도보일러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MTCTE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RDSO (인도철도인증)	STQC (인도생체인식장치인증)
	TRA (인도 및 티벳지역농자재인증)		
인도네시아(6)	BKI (인도네시아선급인증)	BPOM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등록)	SDPPI (인도네시아 유무선통신기기인증)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ALKES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등록)	EcoLabel (인도네시아 환경부 에코라벨 인증)
중국 (32)	CCC (중국강제인증)	CCIS (중국네트워크핵심설비 및 사이버보안전용 제품안전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 감독관리)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HINA ORGANIC (중국유기농식품인증)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등록제도)	CMA (중국계량인증)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CRCC (중국철도제품인증)	CSEL (중국보일러 및 압력용기인증)
	Food Safe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수입첨가제등록)	Former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중국미생물수입등록)	GACC (중국식품해외제조자등록)
	GB 18030 (중국어인코딩인증)	GB TEST (중국국가표준규격시험)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약제품인증)	LA mark (중국노동보호용품 마크인증)	MARA (중국반려동물사료인증)
	MOA (중국비료허가)	MOH (중국수입식품수관련 안전제품위생허가)	NAL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국가별 (지원 건수)	규 격 명		
	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신식품원료허가)	NIM (중국계량계측품질인증)	NMPA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등록제도)
	SAMR (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Sanitary License for the Production of Disinfectants and Disinfection Equipment (중국소독제등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중국자율제품인증 (CQC,CVC등)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	-
두바이(1)	DEWA (두바이 수전력청 인증)	-	-
중동(1)	GCC (중동적합성마크)		
캐나다 (12)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CMC (캐나다건축자재인증)	CCPSA (캐나다소비자제품안전법)
	CNF (캐나다화장품사전신고)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SA STAR (캐나다클라우드 서비스인증)	CWB (캐나다용접인증)	ISED (캐나다통신기기인증)
	MDEL/MDL (캐나다의료기기인증)	NRCAN-Energy Efficiency (캐나다에너지 효율관리제도)	TDG Regulations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2)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Kuwait Telecom Approval (쿠웨이트 통신 기기 형식 승인)	-
페루(5)	Registro sanitario (보건 등록증)	DIGEMID (페루 의료기기 인증)	MTC (페루 유무선 통신 인증)
	MINEM (페루 에너지광업부 설비 인증)	SENASA (국가농업위생청 인증제도)	
콜롬비아(5)	ICONTEC (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INVIMA (콜롬비아식품의약품인증)	RETIE (콜롬비아변압기강제인증)
	RETIQ (콜롬비아에너지효율)	RETILAP (콜롬비아 조명인증)	
폴란드(3)	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	NTA (폴란드건축자재인증)	PPP (폴란드농약약품등록)
에티오피아 (2)	ECEA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ETA (유무선통신기기 통신 인증제도)	-
필리핀 (6)	ERC (필리핀배전시스템 규격인증)	ETV-Philipp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NTC (필리핀통신인증)	PEFC (필리핀산림제품인증)	PFDA (필리핀식품 의약품의료기기인증)
라오스(1)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
베트남 (7)	CR Mark (베트남안전규격인증)	DAV (베트남보건부 의약청화장품등록)	DMEC (베트남의료기기수입허가)
	PPD (베트남비료허가)	VFA (베트남식품인허가)	VNEEP (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호주 (18)	ABA Seedling (호주생분해인증제도)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전 및 배기량규격)
	AFRDI (호주사무가구품질인증)	AGA (호주가사안전인증)	AISEP (호주정보보안 평가프로그램)
	APEC CBPR (호주APEC 개인정보보호인증)	APVMA (호주농약동물용 의약품등록)	AS (호주표준규격)
	ASD (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	ASI (호주알루미늄생산 공정환경인증)	Code 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인증)
	PS (호주개인보호장비)	RCM (호주전기전자 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제품품질인증)
	TGA (호주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인증)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3)	Green Label (홍콩그린라벨)	HKSM	OFCA

국가별 (지원 건수)	규 격 명		
		(항공제품안전마크)	(항공이동통신인증)
이라크(1)	COSQC (이라크 표준)	-	-
남아프리카 공화국(3)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신제품인증)	NRCS (남아프리카공화국 강제규제)	SABS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규격인증)
이란(3)	CRA (이란무선통신기기인증)	ISIRI (이란강제인증)	MOH (이란화장품의약품인증)
나이지리아(2)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NCC (나이지리아 유무선통신인증)	-
아랍 에미레이트(4)	Dubai Civil Defence (두바이화재예방제품승인)	ECAS (아랍에미레이트안전인증)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TRA (아랍에미레이트 유무선통신인증)		
이스라엘(4)	IAI (이스라엘항공우주인증)	SII (이스라엘표준규격인증)	MOC (이스라엘 유무선통신인증)
	AMAR (이스라엘 의료기기부 인증)		
우크라이나(1)	Ukr SEPRO (우크라이나제품인증)		
모로코(1)	DMP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칠레(1)	SEC (칠레전기안전 및 에너지효율인증)		
미얀마(3)	MPU (미얀마신용카드 단말기인증)	미얀마FDA (미얀마식품, 의약품, 의료기기허가)	PTD (미얀마 정보통신기기 인증)
이집트(2)	CAPA (이집트의료기기등록)	EDA (이집트식약청화장품등록)	
뉴질랜드(5)	ACVM (뉴질랜드농약약품등록)	BIOGRO (뉴질랜드유기농인증)	BRANZ (뉴질랜드건축자재인증)
	ECNZ (뉴질랜드환경라벨)	New Zealand WELS (뉴질랜드물효율)	
바레인(1)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s (바레인에너지효율라벨)		
캄보디아(1)	DDF (캄보디아화장품등록)	ISC (캄보디아안전표준)	
코트디부아르 (1)	CI-VoC (코트디부아르 수출적합인증서)		
우즈베키스탄 (1)	GOST-UZ (우즈베키스탄적합성인증)		
국제 (117)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 품질인증)	AEM (장비제조협회인증)	ALE 1.0 (RFID제품인증)
	AMCA (국제공조시스템인증)	ASC (지속가능수산물 (양식)인증)	ATP (부패성음식의수송 적합승인)
	Bluesign System Partnership (섬유화학유해물질인증)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BRCGS Packaging Materials (국제식품포장재표준인증)	BREEAM (친환경건축물평가제도)	Carbon neutral certification (탄소중립인증)
	CC (정보기술보안평가)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CMMI Lv3~Lv5 (국제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품질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 및 위치정보제품인증)	Cradle to Cradle (제품가치사슬인증)
	DIN CERTCO Home Compostable (가정용정원퇴비화인증)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 시험인증)	EAC (유라시아적합성인증, 구CU인증)
	Ecovadis (지속가능경영인증)	EffCI (유럽화장품원료품질인증)	EHP003 (국제열파이프안전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EN 16258 (운송온실가스배출표준)	E-Stewards (전자제품재활용표준)
	EtherCAT Compliance test (이더넷적합성테스트)	FAIR TRADE (국제공정무역마크)	FIDO (생체인증)

국가별 (지원 건수)	규 격 명	
FIFA Quality Mark (FIFA품질인증)	FSC (산림관리인증)	FTC (화염시험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OTS (유기농섬유규격)
Green-e® Energy (청정에너지인증)	GRS (국제재생표준인증)	GRSB (지속가능소고기인증)
HDMI (PC·디스플레이·인터페이스 표준규격)	Higg Index (의류산업환경부담지수)	HSNO APPROVAL (유해물질 및 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인증)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표준)	ICSA Labs (IT보안제품성능인증)
IEC 61850 (변전자동화인증시험)	IEC 62282-5-100 (휴대용연료전지전원 시스템안전표준)	IECEX (국제방폭인증)
IFCC HbA1c (당화혈색소측정 검출기기인증)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유기농인증)	ILO-Better work (국제노동인권인증)
International EPD (국제환경성제품선언)	Intertek Green leaf mark (인터텍그린리프마크)	IPA (클린룸인증)
ISCC (바이오매스및에너지인증)	ISEGA (유럽식품접촉안전성인증)	ISO 11119-3 (가스실린더설계및시험)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14064 (온실가스배출, 감축, 검증제도)	ISO 21434 (자동차사이버보안)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 위험안전인증)	ISO 26262 (자동차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 3834 (국제용접품질인증)
ISO 7096 (토공건설기계운전자관련 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 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 테니스코트제품인증)
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합인증)	LEED (녹색건물인증제도)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MSC-CoC (지속가능수산물인증)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 부품인증)	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 미사용인증)	OCPP 1.6 (전기차충전기규약)
OCS (유기농섬유인증)	OEKO-TEX® Standard 100 (국제친환경섬유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인증)
OK Biobased (국제바이오제품인증)	OK Biodegradable Certification (국제생분해성친환경인증)	OK compost (생분해성인증)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 보안국제규격)	Product carbon footprint label (탄소발자국제품라벨)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인증)	R&A Certificate (골프용품인증)
Rainforest Alliance (열대우림보호인증)	RCS (재활용원료포함제품인증)	REPULPABLE AND RECYCLING CERTIFICATION (종이 및 펄프재활용인증)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SB (바이오기반원료, 연료인증)	RSPO (국제친환경팜유인증)
RTRS (지속가능콩재배인증)	RWS (친환경울생산복지인증)	SEMI (반도체장비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META (윤리적공급망인증)
SQF (식품품질안전)	STANAG (NATO군사장비 표준화협정)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 차단검증인증)	TISAX (자동차정보보안평가)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UN Specification Mark for Packaging (UN위험물운송용 포장용기마크)	UN38.3 (리튬배터리운송 안정성시험)
USB-IF (USB개발자포럼인증)	Water Footprint Network (물발자국네트워크)	WHO (세계보건기구살충제인증)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WPS (용접절차인증)	WT-Recognition (세계태권도연맹공인인증)
ZDHC MRSL(Lv 1이상) (유해물질배출규제)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인증 (VISA, AMEX, MASTER등)

### 3. 기타

#### □ 유의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붙임기]의 양식에 따라 참가포기신청서를 즉시 경기FTA통상진흥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동안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제한 적용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자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 ex) 해외전시회 개막일, 통상촉진단 파견일

다. 참가제한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중이거나 게시되는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참가할 수 없음

- 단, 既 선정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 가능
  - 참가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게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 ex) 참가제한기간이 7.31.까지인 경우 7.30.에 공고 게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 불가

####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한 경우(공장이전, 인명 사망사고, 기계파손, 원자재 수입차질 등)

※ 포기기업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자료 제출, 1개월 초과 시 초과 당일부터 1년간 지원제한 적용

라.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마. 문의처 : 경기FTA통상진흥센터 도지은 대리 T. 031-8064-1391, E. [dje0201@gsmba.kr](mailto:dje0201@gsmba.kr)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통상진흥센터)

